

시 민

문서번호	외국인다문화담당관-3117
결재일자	2012. 12. 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다문화가족팀장	외국인다문화담당관
박경길	김지혜	12/13 배현숙
협조		

(舊)서울의료원
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 승인계획

2012. 12

여성가족정책실
(외국인다문화담당관)

『舊서울의료원』 사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승인계획

서울시, 현대차정몽구재단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협약에 의거 설치·운영('11. 12월)되고 있는 「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의 (구)서울의료원(지상3층, 1,124.17㎡)사용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 승인을 처리하고자 함

I 재 산 현 황

■ 재산개요

- 위 치 : 강남구 삼성동 171-1 (舊 서울의료원)
- 현 황

구 분	면 적	재산가액	비 고
토 지	대지 1,124.17㎡	10,174백만원	개별공시지가 9,380천원/㎡('12.1.1기준)
건 물	연면적 1,124.17㎡	742백만원	건물평가액 660천원/㎡

- 재산관리관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

■ 추진경위

- 2010.10.28 해비치재단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센터설치를 위한 서울시 무상장소 제공 요청
- 2011.05.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방침 수립 (장소제공 및 임대료 지원)
- 2011.06.08 센터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(서울시 장소제공+현대차정몽구재단 자원조달+(사)한국다문화센터 운영)
- 2011.07. 서울의료원 건물 사용제한 해소 ('공용시설보호지구안'에서의 건축물제한시설에 대한 교육 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삭제)

- 2011.08.11 센터설치·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계획수립
- 2011.08.31 센터 설립을 위한 3자간 상세협약 체결
- 2011.09.26 용도변경(의료시설 → 교육연구시설)
- 2011.10.21 내부리모델링 공사 실시('11.30완료)
- 2011.11.14 사용허가신청((사)한국다문화센터→서울시)
- 2011.12.05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개원

II **사용허가 승인**

■ **사용허가 신청**

- 신청자 :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
- 신청근거 :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2조제1호(각 기관의 협력범위)
- 신청기간 : 2013. 1. 1 ~ 12. 31
- 사 용 료 :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
- 사용조건 :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
- 사용목적 : 「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운영

※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개요

- ◆ 운영법인 : (사)한국다문화센터(대표 최홍규, 보선)
- ◆ 시 설 : 강의실 등 25실
- ◆ 인 력 : 센터장, 직원 등 11명
- ◆ 주요사업 : 중도입국 자녀 중점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중도입국 자녀 모집·발굴 : Welcome Kit 제작, 교통비 지원
 - 한국어 교육 : 한국어 교육, 한국어 교재 및 교구 개발,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등
 - 심리상담 지원 : 개인 및 가족의 체계적·전문적 상담 실시
 - 학력인증 교육과정 운영 :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, 고입검정고시반 운영
 - 진로·취업 지원 : 진로지도, 취업 및 자격증 교육 등
- ※ 상기 세부사업은 향후 “온드림 센터 운영위원회” 의결로 결정·변경될 수 있음

■ 관련 근거(법규)

○ 사용허가관련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시행령 제12조
- 「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및 31조

○ 사용료 산출관련 근거

- 「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 29조

※ 근거(법규) 세부 내용 : 첨부 3 참조

■ 사용허가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

- 「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는 서울시의 무상장소 제공,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재원조달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운영으로 개원('11. 12. 5), 중도입국자녀, 다문화자녀, 성인이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(※ '12년도 실적 : 9개과정 25개반 1,210명)
- '13년에는 다문화 자녀 및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(청소년 수련관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)과의 차별성과 서울시 중도입국자녀 중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발굴·모집에서부터 한국어교육, 심리정서지원 등의 종합적·체계적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('13년도 사업계획 승인 : 온드림센터 운영위원회)
- 그러나, 동 센터의 행정재산 사용은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관계로 유상 사용허가를 승인하고, 임대료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당초 협약사항인 무상장소 제공을 이행하고자함

※ 무상 사용허가 대상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- 무상장소 제공에 대한 근거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

■ 사용허가 승인조건

- 승인대상 : 강남구 삼성동 171-1 (구) 서울의료원(3층 1,124.17㎡)
- 방 법 : 업무협약에 의한 사용허가
 -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2조 제1호
- 사용목적 : 「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운영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점 제공

○ 사용기간

- 1차 : 2013. 1. 1 ~ 1. 31
- 2차 : 2013. 2. 1 ~ 12. 31

○ 사용료 : 281,307,840원

- 1차('13. 1월분) : 23,442,320원

- 토지 : $1,124.17\text{m}^2 \times 100/60 \times 9,38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1/4 \times 1/12 = 18,343,400\text{원}$
- 건물 : $1,124.17\text{m}^2 \times 66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0.96 \times 1/12 = 2,967,800\text{원}$
- 부가가치세 : 2,131,120원

- 2차('13. 2 ~ 12월) : 257,865,520원

- 토지 : $[1,124.17\text{m}^2 \times 100/60 \times 9,38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1/4 \times 1/12] \times 11\text{개월} = 201,777,400\text{원}$
- 건물 : $[1,124.17\text{m}^2 \times 66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0.96 \times 1/12] \times 11\text{개월} = 32,645,800\text{원}$
- 부가가치세 : 23,442,320원

○ 사용조건

-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
-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- 허가조건(첨부 2) 준용

- 첨부 1. 도면(항공사진, 현장사진, 위치도) 1부.
2. 허가조건 1부.
3. 관련근거(법규) 1부. 끝.